



이슈리포트

2007.1.12

통신방송융합

KT노동조합

www.kttu.or.kr

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■전화:031-727-4800 ■팩스: 031-727-4815

1 통방융합이란?

통방융합이란 말 그대로 “통신과 방송”, “방송과 통신”이 융합한다 즉 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제공(IP-VOD, IP-multicasting, 무선인터넷을 통한 방송서비스등), 방송망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제공(초고속인터넷, VoIP)의 망의 융합과 인터넷방송, Interact TV등과 같은 서비스의 융합 및 스카이라이프, DMB서비스 등 사업자의 융합 등 여러가지로 나타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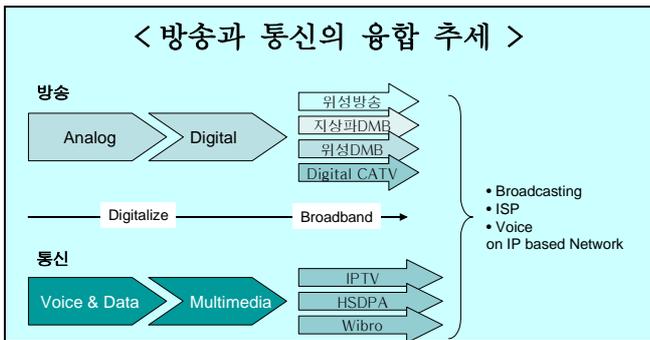
이미 제공

○ 모든 네트워크는 IP를 기반으로 진화하여 네트워크의 구분에 의한 사업 분류는 어려워 질 것이며, IPTV는 특정 사업자 영역이 아닌 모든 방송, 통신사업자가 추구하는 궁극적 사업 모델이 될 것임

- IPTV는 일반TV에 비해 훨씬 다양한 서비스로 차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미래 미디어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전망 (개인미디어, 고객맞춤형, 참여형, 실용형 등)

2 기술의 진화 및 통합 Trend

○ 방송과 통신영역은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점차 통합되고 있는 추세임



- 통신사업자는 이미 90년대부터 디지털화를 통해 영상서비스 제공을 추진해 왔으며, 광대역화 및 품질보장이 됨에 따라 고품질의 영상서비스가 가능해짐
- 방송사업자도 디지털 전환 및 광대역화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, VoIP서비스를

3 통방융합관련 진행사항

□ 방통융합 법제화 현재 진행사항

○ 방통융합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6.7월 대통령지시로 공약사항인 방통융합관련 법제화 추진을 위한 방통융합추진위원회(융추위)를 구성함.

- 융추위의 2가지 과제는 통방융합기구 개편 후 IP-TV 서비스 수용이라는 밑그림으로 출발

○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“기구개편(안)”에 대한 연내 입법추진 노력

- 융추위서 방송위와 정통부 1:1 통합기구개편(안) 발표 : 2006.10.27일

- 융추위 주관 방통기구개편 설명회 개

최 : 2006.11.10일

- 국무조정실 방통융합관련 관계 장관회의 개최 : 2006.11.12일

* 장관회의 결과 IP-TV 입법화를 내년으로 연기. 이는 연말까지 융합기구 개편안과 함께 IP-TV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당초계획을 수정한 것임.

- 기구개편법안 논란으로 국조실의 입법 예고 2차례 연기 : 2006.12.4일

○ 국무조정실 입법예고 : 12.6~14일

○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: 2006.12.11일

○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완료 : 2006.12.14일

○ 차관회의 : 2006.12.28일

○ 국무회의 : 2007.1. 3일

□ 향후 추진일정

○ 국회에 방통융합 기구법안 제출 : 2007.1월중

□ 주요내용

○ 먼저,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, 부위원장(2인), 상임위원(2인) 등 모두 5명으로 구성하되, 상임위원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토록 하였음

- 또한 위원은 임기중 그 직무상 외부의

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

-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임기제를 도입

* 최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, 또 다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함

○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하되,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상(제19조)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음

-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인허가,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·편성, KBS등 방송사 이사 및 임원 추천/임명 등임

○ 국무회의 의안제출은 관련부처와의 정책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현행 방송법상의 규정(제22조제4항)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해 제출토록 하였음

○ 위원회는 방송·정보통신·전파관리·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하

되, 우정사무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함을 부칙에 규정하였음

○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토록 하였음

○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“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”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토록 하고,

-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중 6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규정하였음

○ 또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 방송위원회의 직원과 정보통신부 직원의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였음

-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고용승계되도록 하고, 정보통신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하였음

4업계 주요 주장

IPTV 정의에 대한 논란

▶ 주장 주체: 정통부, 방송위, 케이블사업자, 언노련 등

- IPTV는 다채널 방송이 주요 사업 모델이므로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
- 디지털 종합유선방송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 주장
- 언노련은 통신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 방송법으로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
- 통신계는 다채널방송뿐 아니라 전통적 통신서비스 및 다양한 양방향 데이터서비스를 포함하므로 통신보다는 융합서비스임을 주장

산업 활성화와 공익성 확보 관련 논란

▶ 주장 주체: 기존 방송사업자, 시민단체, 언노련 등

- 융합서비스 관련 통신측과 방송측의 강조점이 상이
 - 방송측 (방송위, 방송사업자, 시민단체, 방송노조) : 방송서비스에 걸맞는 공익성 확보 요구
 - 통신측 (정통부, 통신사업자):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강조
- 방송계는 최근의 융합서비스에 대해 산업중심 논의구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방송의 공익성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융합서비스에 대한 방송규제의 적용을 주장
- 나아가 대자본인 통신사업자가 통방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방송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 제기

5 해외 사업 동향

최근 주요국가의 대표 통신사업자들은 고품질 초고속접속 투자를 통해 경쟁적으로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, 세계적인 가입자 규모도 2010년 약 6300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

○ IPTV 서비스는 2000년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함

- 2000년 9월 영국의 Video Networks에서 IPTV 서비스인 'HomeChoice' 서비스 개시
- 이후, 2003년도부터 군소 통신사업자들을 중심으로 IPTV 서비스 제공 확산 (PCCW, Fastweb 등)

○ 최근 주요국가의 유력 통신사업자들이 공격적으로 IPTV 서비스를 도입중

- 미국, 유럽, 중국, 일본 등 세계 40여개국 200여개 사업자들이 이미 IPTV서비스 실시 또는 도입중(미국 AT&T, Verizon, 영국의 BT, 독일의 DT 등)

○ EU등 주요 국가들은 '규제완화' 및 '경쟁활성화'를 융합시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, 수평적 규제체계를 통해 이를 실현 노력

○ 미국의 경쟁 활성화 사례

- 소유/경영규제가 아닌, 사후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

- 프로그램접근법(Program Access Rules)을 제도화

- 케이블TV가 유료방송시장을 선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PTV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고 있으며, 지역사업권 확보가 전국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, 사업활성화 유도

6 결론 및 미치는 영향

○ 기술발전에 의해 미디어가 변화하고 방송과 통신이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있으나 규제기관간 사업자간 입장차이로 인한 논란 가속되고 있음

- 통방융합기구 출범지연
- IPTV 논의 불가

○ 통방융합의 대표작인 IPTV의 표류

- 소비자 선택권리 제한
- 연관산업 활성화 지연
- 통신시장 성장정체 극복위한 신성장엔진 가동 지연

○ 산업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

- 콘텐츠시장등 관련산업 성장 지연
- 표준화 지연등으로 국가 경쟁력 추락 및 관련 장비시장 경쟁력 상실